

2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이것들을 총칭하여 ‘고정자산’이라 함)을 소유한 분을 대상으로 해당 고정자산의 평가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아울러 고정자산세는 도시계획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상각자산……사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기계, 차량, 기구, 비품 등



(1) 고정자산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고정자산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후쿠오카시에 고정자산이 있는 분이 대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 지	등기부 또는 토지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분
가 옥	등기부 또는 가옥보충과세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된 분
상각자산	상각자산과세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된 분

이와 같이 고정자산세는 등기부 또는 과세대장에 등기 또는 등록된 분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 등으로 고정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신 소유자로 변경되어도 1월 1일 현재 등기부 등에서 명의변경 수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상각자산 신고

상각자산 소유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의 자산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 상점 등의 설비와 비품 이외에도 개인이 임대 주차장, 임대 맨션 등에 설치하는 펜스와 같은 외부 구조물, 포장도로, 주차장 설비도 상각자산 신고 대상입니다.

(3) 납기 및 납부방법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송된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회(4월, 7월, 12월 및 이듬해 2월)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4 월	7 월	12 월	2 월



※ 납부기한은 월말까지입니다.(12월은 28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 또는 연말연시(12/29~1/3)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에서 전출을 하거나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잊지 않고 반드시 잔여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구획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 도시계획세 납부대상 외국인(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 납부대상은 고정자산세의 납세의무자 중에서 매년 1월 1일 현재 시가화(市街化) 구역 내에 토지, 가옥을 소유한 분입니다.

(2) 납기 및 납부방법

고정자산세와 함께 납세통지서(납부서)로 연 4회(4월, 7월, 12월 및 이듬해 2월)에 걸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기월	제 1 기	제 2 기	제 3 기	제 4 기
	4 월	7 월	12 월	2 월

※ 납부기한은 월말까지입니다.(12월은 28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토, 일, 공휴일 또는 연말연시(12/29~1/3)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